

하도급 부조리, 서울교통공사가 해결하겠습니다!

(주)혁신전공사 김희웅 대표님

항상 서울교통공사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사대금 미지급과 불공정행위 등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직불제와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권장하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하도급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경제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공사대금 지연지급,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예고 알림판 설치'와 '공사대금 지급 SMS 문자전송'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적기에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노력만으로는 하도급 부조리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원도급자, 하도급자, 현장 감리인 및 현장종사자 모두 함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조리에 대해 단호하게 신고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도급 부조리 민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없는 공정한 건설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감독 : 도시철도연구원 시스템연구팀 성명 박상천(02-6110-8145)
- 서울시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 02-6361-3600
- 서울교통공사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 02-6110-9933, 9968

서울교통공사사장

부 조 리 예 방 안 내 문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업무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담당직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벌 및 엄중한 징계벌을 받게 되며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민원인 또한 형법상의 뇌물공여죄에 한 처벌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력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없는 깨끗한 직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직원의 금품요구 또는 분위기 조성 및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신고사항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편이나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보호되므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8년 11월

서울교통공사 사장

○ 서울교통공사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6311-9933

시민고객의 권리

시민고객께서는

1.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사 직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친절,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소 속 : 도시철도연구원 시스템 연구팀

성 명 : 박 상 천

전 화 : (02) 6110 - 8145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 (02) 6311-9933

■ 서울교통공사: ☎ 1577-1234

신고센터 운영

www.seoulmetro.co.kr / 정보공개 / 부조리신고센터 / 공직자비리신고



이용정보 | 시민 참여 | 알림마당 | 정보공개 | 안전환경 | 공사 소개

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관련규정
관련처적

정보목록

사전정보공표

결재문서/회의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개방

청탁금지법

반부패/청렴

비리신고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SNS 공유

facebook

twitter

정보공개제도란

누구나 단정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정보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제도란

●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후자를 「발표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업무결의서의 열람·복사 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연혁사항 등한 정보 제공, 간행물 배포 등]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공사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지점	법률 제542호 (1996.12.31) 포 1998.1.1 시행	법률 제4754호 (1994.1.7) 포 1995.1.8 시행	법률 제5241호 (1996.12.31) 포 1998.1.1 시행
입법목적	국민과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익침해, 정보유출 방지	국민행위 시정보장 합질함에 기회 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도 모든 정보	개인인신상 관련정보	행위위주 단문정보
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비리신고센터 운영

(공직자비리신고, 공익신고, 갑의 부당신고, 부정청탁등록, 하도급 부조리 등 신고)

www.seoulmetro.co.kr / 정보공개 / 부조리신고센터

물 품 제 작 감 독 자 서 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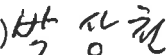
소 속 :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연구원
직 급 : 차장(4급) 성 명 : 박상천
건 명 : ATC지상신호 검측장비 제작구매 건

본인은 상기 물품제작구매계약건의 감독(검수)자(지원업무수행자)로 임명되어 감독(지원업무수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서울교통공사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는 물론 손실액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가. 서울교통공사를 대표하는 직원임을 자각하여 공·私를 분명히 하고 감독자(지원업무수행자)로서 규격서(과업지시서) 등에 의거 감독(지원업무수행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나. 물품 제작구매계약 추진 중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세히 알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다.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확한 취업 제공 포함)수수 등 제반 부조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 라.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를 받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 마. 제 규정에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 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 사. 직원 신분을 망각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서약자 : 박 상 천 (인) 

서울교통공사 귀하